

2025. 신사1동 주민총회



2025 신사1동에서 실행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그린생태분과

정리수납배워서남주자 2기

- 실행분과 그린생태분과
- 예산 6,000천원
- 사업명 정리수납배워서남주자
- 사업기간 2025. 6. 4.(수) ~ 7. 23.(수) 09시 30분 ~ 12시 30분 (총 7회)
- 장소 신사1동 주민센터 4층 강당
- 사업내용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교육 진행, 아나바다 환경실천, 정리수납 봉사 진행, 수료식 및 봉사단 발대식





나도 한마디!

공간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

주변 환경 개선해서 내 일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2배의 법칙:
지금 정리 안하면 2배가 된다.

전문 강사님께 알차게 배운 것
서툴지만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신사1동 주민자치회 결과보고서

배움문화분과

드론배우기

- **실행분과** 배움문화분과
- **예 산** 13,000천원
- **사 업 명** 드론배우기
- **사업기간** 2025. 6. 9.(월) ~ 7. 7.(월) 15시 ~ 17시 (총 5회)
- **장 소** 덕산중학교 체육관
- **사업내용** 드론을 배우려는 수요자가 많음, 수업료가 비싸 접근성이 부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여 청소년에게 새로운 직업의 기회 제공

신사1동 드론으로 날다!

2025. 6. 9. ~ 7. 7. (총 5회) (매주 목요일)
 안동 3시 ~ 5시

4월 2주

회차	주제	강사	내용
1	드론 1강	김민	드론의 이해 (개념/종류)
2	드론 2강	김민	드론 기초 조립/점검
3	드론 3강	김민	드론 비행기법 및 장애물 회피
4	드론 4강	김민	드론 촬영 및 영상 편집
5	드론 5강	김민	드론의 사회적 활용

주요강사: 김민 (드론 전문 강사)
 * 드론 조립, 비행기법, 영상 촬영 등 실용성 있는 내용
 * 드론의 다양한 활용 분야 소개

신청기간: 2025년 5월 7일부터
 신청처: 신사1동 주민자치회 201호 (안동시)
 신청방법: 010-3151-0106-7
 문의처: 신사1동 주민자치회 | TEL 02-3151-0106-7





나도 한마디!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시간을 보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배우기 쉽지 않은 드론을 배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드론을 배우며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을 알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소통공간분과

은행나무개미장터

- **실행분과** 소통공간분과
- **예 산** 10,000천원
- **사 업 명** 은행나무개미장터
- **사업기간** 2025.6.14.(토), 9.21.(일) 10시~16시 (총 2회)
- **장 소** 신사동교회주차장, 새락골어린이공원
- **사업내용** 벼룩장터, 체험부스 등 행사를 통해 주민 화합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나도 한마디!

신사1동 주민자치회의 멋진 행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체험이 많아 신났습니다.

마을축제와 더불어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하고 먹거리도 맛있어서 아이와 함께 즐거웠습니다.



건강복지분과

생활집수리학교

- **실행분과** 건강복지분과
- **예산** 14,500천원
- **사업명** 생활집수리학교1차 (총 7회), 2차 (총 5회)
- **사업기간** 1차 2025. 6. 24.(화) ~ 7. 15.(화) 14시 ~ 16시,
2차 9. 30.(화) ~ 11. 4.(화) 14시 ~ 17시
- **장소** 신사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 **사업내용** 생활 속에 필요한 간단하고 활용성 높은 집수리 방법, 공구 설명 및 사용법, 취약계층 및 독거, 1인 가구 봉사 및 실습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여 청소년에게 새로운 직업의 기회 제공



나도 한마디!



공구 사용법을 배우고 나니 집안 간단한 수리도 어렵지 않네요.

신사1동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봉사도 해서 뿌듯합니다.



어르신 집안 곳곳 고쳐주느라 감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이 환해졌어요~ LED 등 교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평1동1대학 날아올라합창

- **실행분과** 주민자치회 전체
- **예 산** 13,350천원
- **사 업 명** 은평1동1대학 날아올라합창
- **일 시** 2025.6.11.(수) ~ 11.13.(목) 18시30분 ~ 20시30분 (총 28회)
- **장 소** 서울기독교대학교 소강당
- **사업내용** 하나의 동이 하나의 대학과 연결된다는 취지 아래 구민의 일상적 필요와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대학의 전문성을 연결





나도 한마디!

합창을 배우는 과정과 교수님의 열정에 감탄, 지칠 줄 모르는 열의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안보이면 안부를 묻게 되고 자연스럽게 돌아 볼 마음도 생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지휘자님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단원들도 열심히 합창단
사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신사1동
2025.
은평1동-1대학
교육사업

신사1동 날아올라 합창단 정기 연주회

클래식 합창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7시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신사1동 주민자치회 회장 김 규 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의견수렴 및 논의	2021.1.19.	운영세칙수립 워크숍
	운영 세칙 초안 정리 1	2021.2.17.	운영세칙준비위원회
	운영 세칙 초안 정리 2	2021.2.24.	운영세칙준비위원회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1.3.18.	정기회의
1차 개정	운영세칙 개정 초안	2022.3.17.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수정안	2022.3.21.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2022.3.23.~3.28	밴드 및 SNS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2.3.31.	정기회의
2차 개정	운영세칙 개정 초안 정리	2022.7.21.~8.31.(총7회)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수정안	2022.9.14.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수정 2차안	2022.9.21.	운영진회의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9.22.~9.27.	밴드 및 SNS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2.9.29.	정기회의
3차 개정	운영세칙 개정 수정안	2022.10.19.	운영진회의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10.25.~10.26.	밴드 및 SNS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2.10.27.	정기회의
4차 개정	운영세칙개정 초안정리	2023.6.28.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2023.6.30.~7.11.	SNS및운영진회의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3.7.18.	정기회의
5차 개정	운영세칙개정 초안정리	2024.4.11.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2024.4.13.~4.15.	SNS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4.4.16.	정기회의
6차 개정	운영세칙개정 초안정리	2025.4.21.	운영세칙개정위원회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2025.7.1.~7.20.	밴드 및 SNS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5.7.21.	정기회의

2025. 07. 21.



신사1동 주민자치회



신사1동 주민자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2021.	3.	18.
개정	2022.	3.	31.
개정	2022.	9.	29.
개정	2022.	10.	27.
개정	2023.	7.	18.
개정	2024.	4.	16.
개정	2025.	7.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신사1동 지역사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에 따라 신사1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신사1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신사1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조례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 및 분과위원장, 분과총무, 사무국장, 간사를 말한다.
7. “분과원”이란 신사1동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조례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자치회(장)에게 분과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과 활동을 한 주민을 말한다.
8. “분과위원”이란 제2호의 자치위원과 제7호의 분과원을 말한다.
9.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사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신사1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이용 목적 배제
 7. 지역사회 봉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본조개정 2024.4.16.)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4.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5.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 위탁·수탁 처리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자격은 조례 및 「신사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한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한다.
- ④ 자치위원은 직능단체(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지도협의회, 주민자치회) 3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 위촉할 수 없다.(본조개정 2025.7.21.)

제10조(위원의 해촉)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위원의 의무)에 따른 위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연간 4회 또는 분과회의 연간 4회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본조개정 2025.7.21.)
 3.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주민자치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촉을 결의하고,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개정 2024.4.16.)

제11조(사임 및 해임)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 당일로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사임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임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24.4.16.)
- ③ 운영진이 사임 시에는 사임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자치회장은 운영진 3분의 1 이상 발의하여 운영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 ① 주민자치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운영진을 둔다.
- ②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자치부회장 1명
 3. 감사 2명 (회계감사, 사업감사 각 1명)
 4. 분과별 분과위원장 1명
 5. 분과별 분과총무 1명
 6. 사무국장 1명(사무국장의 임기는 제19조 3항에 준한다.)(본조개정 2025.7.21.)
 7. 간사 1명

제13조(운영진 선출)

-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두며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되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차수 득표자로 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무기명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 득표 시 선출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③ 분과총무는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 또는 호선한다.

제14조(임원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출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투표방식 등의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4.16.)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5조(운영진 임무) (본조개정 2024.4.16.)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반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④ 수시 감사 시에는 감사 시작 30일 전에 자치회장에게 감사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며, 분과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총무가 분과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⑥ 분과총무는 분과회의 결정사항과 분과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⑦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록으로 보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전반을 수행한다.

제16조(궐위와 후임선출)

- ①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분과위원장 중 호선하여 남은 임기동안 자치부회장직을 수행한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치위원과 분과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치위원 수는 최소 5명 이상으로 하고, 자치회관 운영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며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총무를 호선 또는 선임한다.
- ④ 각 분과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2. 행정사무 위·수탁 발굴
 3. 마을 공동사업 수행

제18조(사무국)

-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조개정 2024.4.16.)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사무국장)(본조개정 2024.4.16.)(본조개정 2025.7.21.)

-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 채용 및 근로·배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구 채용방침 등을 따른다.
-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 ④ 사무국장은 근무상황부 및 시간외근무상황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 ⑤ 사무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권위 될 경우, 모집 당시 예비자가 있으면 예비자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에 따라 후임을 채용하고 잔여 근로 계약기간동안 사무국장 직을 수행한다.
- ⑥ 삭제

제20조(간사)(본조개정 2025.7.21.)

- ① 간사는 운영진에서 협의하여 자치회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호선할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선발 할 경우에는 은평구 주민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 ② 간사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사무를 보조하며, 위원 관리, 각종 사업 및 행사실행보조, 자료 정리 및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21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임시회의
 4. 운영진회의
 5. 민관협력회의
 6. 분과회의
-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1호부터 5호까지 회의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6호의 회의 종료 후 총무가 회의록을 작성한다.(본조개정 2025.7.21.)
- ③ 주민자치회의 모든 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나, 참관인의 발언권은 제한할 수 있다.
- ④ 정기·임시회의의 주요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본조개정 2025.7.21.)

제22조(주민총회)(본조개정 2024.4.16.)

- ① 주민총회(온라인 주민총회 포함)는 주민자치회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7세 이상의 주민(신사1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온라인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⑧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⑨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의 정기회의(온라인 정기회의의 포함)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정기회의의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 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본조개정 2024.4.16.)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주민자치회 감사 보고
 5. 주민총회 개최 및 의제 확정 등 관련된 사항
 6.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요구
 7.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 등의 경우 정기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은 있다.
 9.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10.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11.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12.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④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주민자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세칙 제12조에 따른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토의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 ④ 감사와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의 내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본조개정 2024.4.16.)

제25조(분과회의)

-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매월 운영진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여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5.7.21.)
- ④ 분과원은 분과회의에서 의결권과 발언권이 있다.
- ⑤ 분과 활동은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

제26조(민관협력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주민공론장 및 성과공유회)(본조개정 2024.4.16.)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연말에 당해 연도의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및 평가, 다음 연도 사업안내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제28조(회의 의결)

- ① 모든 회의에서 위원은 의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의장은 거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운영세칙변경(제정·개정·폐지)
 - 2.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 4. 법령위반 사항 및 의결 실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재의결
- ④ 대면회의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 등을 통한 비대면 의사표시로 의결하거나 대면과 비대면의 방법을 병행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자치계획 수립)

- ① 운영진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②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 4. 평가계획
 -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③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④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회관의 운영

제30조(자치회관 운영 원칙)

-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 관리

제3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 ① 주민자치회에서 작성 및 수·발신 공문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4.16.)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주민자치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8. 위원 위·해촉 대장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2조(직인)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사무국장과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인수인계)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진의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 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상세히 기록·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 위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 시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사무인계)를 준용하되,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 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비 집행 · 공개)

- ①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자치위원 등이 후원한 예산

제36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과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감사수감)

-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특별회비)

- ① 주민자치회 회비는 월납 10,000원, 연납 100,000원(1분기 내 납부 시)으로 한다.
- ② 신규로 자치위원에 선출된 경우 선임될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비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는 운영경비, 행사 등에 사용
 2. 회비 사용 내역은 정기회의 때 공개
 3. 회비 사용 후 잔금이 있을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가능
- ④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3. 31.)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운영진에서 결정하고 정기회의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른다. 단, 조례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부 칙 (2022. 9. 29.)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제9호, 제6조제1항, 제9조 제2항에서 제4항,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제6호,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2조 명칭, 제12조 제3항 제3호에서7호,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15조 제3항에서 제6항,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및 제5호, 제6호,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명칭,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6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28조, 제4장, 제5장,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4조 제1항 및 제5호의 개정조문, 제2조제5호, 제10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제3장 명칭,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25조, 제27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2조, 제35조 제4항의 신설조문,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3항 본문, 제27조 제3항 2호의 조항삭제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10. 27.)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6항, 제9조 제3항,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1항 및 제5호, 제35조 제4항의 개정조문, 제10조 제4항의 조항삭제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7. 18.)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비)

자치위원의 2023년도 회비는 월납 10,000원, 일시납 60,000원이고, 납부방법은 각자가 선택한다.

제3조(신설·개정)

본 운영세칙의 신설·개정사항은 붙임 신규조문 대비표로 같음한다. (본조신설 2023.7.18.)

부 칙 (2024. 4. 16.)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2024.4.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개정)

본 운영세칙의 신설·개정사항은 붙임 신규조문 대비표로 같음한다. (본조신설 2024.4.16.)

부 칙 (2025. 7. 21.)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2025.7.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개정)

본 운영세칙의 신설·개정사항은 붙임 신규조문 대비표로 같음한다. (본조신설 2025.7.21.)

2025년을 돌아보며

문홍배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미숙

2025 점점 성장하는 주민자치회. 함께해서 더 즐겁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쭉~욱

복낙규

동행하며 소통하는 만족도1 기쁨도1 신사1동

이호희

가슴이 따뜻한 1,2기 위원님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의 3기 위원님들 한해동안 감사했습니다.

나영란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멋진 연말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새해 맞이하세요

이재석

2025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더우면 더운데로 추우면 추운데로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모두 감사했습니다. 2026년에도 건강하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김혜란

2025년 한 해 동안 신사1동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기꺼이 힘써주신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신사1동 주민자치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서용진

올 한해도 주민들과 소통 화합의 계기가 되어서 기쁩니다.

김정수

한 해를 보내며 위원님들의 웃음 하나 한숨 하나가 서로의 위로로 마음에 와닿듯이 한 해를 보낸 내년을 위한 숨 고르기로 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신사1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미란

2025년은 특히 소신과 열정 넘치는 신입 위원님들의 활기찬 활약이 돋보였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신사1동 주민자치회 파이팅입니다.

윤형섭

보람되고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신사1동 자치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26년 더욱 즐겁게
 활동하겠습니다.

최미아

은행나무길을 알리려고
 신사동 교회 앞에서
 우리 동 보금자리 새라골 공원에서
 은평구 역세권 응암역 부근 교통섬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한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네요.

고창덕

굿바이^^ 2025

야속하리만큼 빠른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뿌린
 노력과 진심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얻으며 포기하고 싶은 갈등을 버티느라 힘들기도
 했던 한해였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2026년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해 봅니다. 곁에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용기 갖게 해 준 이웃사촌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해에는 모든 가정 평안하고
 신사1동자치회도 사랑과 행복이 뽐뽐^^
 그런 한 해 되기를.....

함께여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해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사1동 주민자치위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김은신

2025년도 처음 참여하게 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신사1동 주민이지만 별다른 소속감 없이
 지나다녔던 동네 이곳저곳에 관심과 발전의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45명의 위원님들과 알게 된 것도 너무나
 행운입니다. 동네 산책이나 운동할 때 마주치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너무 반갑고 정겹습니다.
 앞으로도 신사1동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형엽

주민자치위원님의 관심과 노고로
 이뤄졌던 사업들을 영상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2025년 수고
 많았어요. 2026년에도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임주현

2025년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주민자치회 행사에 참석하여 활동한
 시간이 환기의 한 다락이 되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주민자치회가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성과있는 신사1동 주민자치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고선분

고맙습니다. 올 한해
 모든 주민자치위원님들
 함께하여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25 신사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5.12.
발행처	신사1동 주민자치회(02-3151-01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디자인·제작	참디자인



신사1동 주민자치회



신사1동 주민자치회

문의_신사1동 주민자치회(신사1동 주민센터 3층) T. 02) 3151-0106